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료방송 사업자 지분제한,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등 〉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11호)

■ 한민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12호)

2025.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검토의견	5
1.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료방송 사업자 지분소유 규제 폐지 등 ..	5
2. 외국자본의 지분제한 완화 및 공익성 심사 도입	10
3.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20
4.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등의 근거 신설	2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6.

다.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유료방송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제8조제5항 삭제).
-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 및 가입자수 산정·검증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 자료 제출 및 검증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삭제, 안 제98조의3 신설).
-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 절차, 심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9. 26.

다.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방송·미디어 환경이 OTT 확산 등 글로벌 경쟁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내 방송 시장은 광고매출 등 수익이 감소하고 가입자수 감소가 가시화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

특히 유료방송은 글로벌OTT 등 신규 미디어의 시장 잠식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존 전략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나, 과거 유료방송이 성장·전성기이던 시기에 국내 시장의 경쟁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현행법은 여전히 유료방송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어 유료방송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제약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유료방송의 위기 타개와 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일간신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여 유료방송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촉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100분의 49 초과 금지) 규정을 폐지함(제8조제2항 삭제).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3분의 1 초과 금지)를 폐지함(제13조 삭제).

다. 외국인이 공익성심사를 통과할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의 주식을 49%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하고, 공익성심사에 관한 사항은 방송법상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민수위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일간신문·뉴스통신의 유료방송 사업자 지분소유 규제폐지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방송사업자 등 유료방송 사업자의 주식·지분소유를 49%로 제한하는 현행 규제를 폐지하고(「방송법」 제8조 제5항,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8조제2항 삭제),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겸영이나 주식·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있음(「방송법」 제8조제9항 삭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소유제한 등) ① ~ ④ (생략)	제8조(소유제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u>	<u><삭 제></u>
⑥ ~ ⑧ (생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u>⑨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u>	<u><삭 제></u>
⑩ ~ ⑫ (생략)	⑩ ~ ⑫ (현행과 같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8조(겸영금지 등) ① (생략)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8조(겸영금지 등) ① (현행과 같음) <u><삭 제></u>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법」(이하 “법”이라 함)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이라 함)은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확보와 여론의 독과점 방지 등을 위하여 대기업, 외국인, 신문사 등 특정 주체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음.

< 방송사업자 소유·겸영 제한 현황 >

구 분	SO	위성방송	IPTV	지상파방송
소유 겸영 (법률 및 시행령)	대기업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인	·49% 이하	·49% 이하	·49% 이하
	신문	·49% 이하	·49% 이하	·49% 이하
	플랫폼→ 플랫폼	·SO→지상파: 33% 이하 * SO→SO·위성IPTV : 제한 없음	·위성→위성: 33% 이하 * 위성→SO·IPTV : 제한 없음	·제한없음 * IPTV→SO·위성IPTV : 규정 없음
	플랫폼→ PP	·TV·라디오·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 수의 1/5 초과 겸영 금지 폐지 ('22.8.16)*	·TV·라디오·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 수의 1/5 초과 겸영 금지 폐지 ('22.8.16)*	·TV·라디오·데이터 PP별 전체사업자 수의 1/5 초과 겸영 금지 폐지 ('25.4.22)

* 「방송법 시행령」 개정('22.8.16일)을 통해 폐지된 규제

○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경우 신문 등을 통해 여론 형성 능력을 갖춘 언론사로, 영향력이 큰 방송까지 동시에 소유할 경우 소수의 언론사가 전체 여론 시장을 지배하는 ‘미디어 독과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여론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이를 규제하고 있음.

- 현행법 제8조제5항, 「IPTV법」 제8조제2항은 일간신문·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유 및 점유율 제한 규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과거에는 소수의 지상파나 일간신문의 여론 형성능력이 컸지만, 현재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은 물론 유튜브, 넷플릭스 등 국내외 OTT, 각종 SNS 등 수많은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어 레거시미디어의 영향력이 감소한 상황으로, 특정 방송사의 소유로 사회 전체의 여론을 독점하기에는 어려운 구조임.

- 또한, 넷플릭스, 디즈니+, 유튜브 등 막대한 자본과 제작 능력을 갖춘 글로벌기업은 국내법상 소유 규제를 받지 않으나, 국내 방송사들은 소유 규제로 인해 대규모 자본 유치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려워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가능함.

- 또한, 현재 유료방송시장은 동일 구역 내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허용되고, 전국 단위의 위성방송사업자 및 IPTV가 등장하면서 경쟁상황에 접어들었으나,

가입자 포화와 성장전략 부재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연관 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와의 대가(代價) 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홈쇼핑 수수료의 매출 의존도가 높아 지속적인 투자와 새로운 서비스 발굴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개정안은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의 유료방송 플랫폼 소유 규제를 폐지하여, 유료방송 플랫폼 시장에 신규 자본 유입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문·케이블TV 등의 M&A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춘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미디어 간 융합 환경에 대응하여 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문의 방송 겸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만, 방미통위 구성 이후 유료방송 소유규제 개선 전반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독과점을 방지하고 여론의 다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함께,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규제 재검토 필요성, 미디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

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겸영 제한을 폐지하고 있는 부분(「방송법」 제8조제9항 삭제)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2024.12.31.)을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가 폐지된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법 제8조제9항은 규제의 구체적인 수준은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제8항은 “특정PP와 특수관계자의 매출액 합계가 전체 PP 총 매출액의 49%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그러나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동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겸영 및 주식·지분 소유제한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겸영 및 주식·지분 소유제한 규정 변화>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8항 [2024. 12. 31, 일부개정 前]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8항 [2024. 12. 31, 일부개정 後]
⑧ 법 제8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란 특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과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을 합한 매출액이 전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총액중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9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매출액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 삭제

현 행	개 정 안
<u>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u> <u><신 설></u> ④ ~ ⑥ (생 략) <u><신 설></u>	<u>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u> <u>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u> <u>제14조의2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 ①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공동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국민의 시청권 보장, 국민 문화 향상,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방송 및 영상산업의 발</u>

현 행	개 정 안
	<u>전에 미치는 영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지의 여부를 심사(이하 “공익성심사”라 한다)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익성심사위원회를 둔다.</u> <u>② 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 또는 등록·신고를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공익성심사를 받을 때까지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100분의 49를 초과 소유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u> <u>③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주는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실이 발생하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공익성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u> <u>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심사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공익성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u> <u>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공익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들을 공익성심사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u>

현행	개정안
<신설>	당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익성심사의 결과에 따라 제1항의 경우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 내용의 변경 및 그 실행의 중지 또는 해당 주식의 매각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및 공익성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 (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야할 자가 납부기한까

현 행	개 정 안
	사)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는 제외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 실시하는 공익성심사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방송채널사용사업”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으로,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보도를 전문으로 하거나 보도·교양·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편성한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자”로 본다.

○ 외국자본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규제로, 그 핵심적인 취지는 방송의 공익성과 문화적 주권을 보호하는 것에 있음.

- 전통적으로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이라는 기술적 한계와 더불어 사회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여론을 주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의한 방송시장의 잠식을 방지하고자 외국자본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현행법은 방송 분야별 공공성 및 여론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외국자본의 지분규제를 차등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경우 외국자본의 지분은 전면규제되며,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10%,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경우 20%, 유료방송 플랫폼 및 일반PP의 경우 49%로 지분 제한을 규정함.

< 방송사업자 별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 비율 >

방송분야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 비율
지상파방송(라디오포함)	0% (전면 금지)
보도전문채널	10% 이하
종합편성채널	20% 이하
SO, 위성방송, 일반PP	49% 이하

○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등 여론 형성과 직결되는 지상파, 보도전문채널, 종합편성채널 등을 제외한 ‘일반PP’와 ‘홈쇼핑PP’에 대해서 정부의 ‘공익성 심사’를 거치면 외국자본에 대해서 49%를 초과하는 투자를 허용하고자 하고 있음.

- 개정안이 규제 완화의 대상으로 하는 방송사업자는 일반PP(드라마, 오락, 영화 등) 및 홈쇼핑PP로 보도·시사 기능이 없거나 미약하여, 외국자본이 유입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론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에 설치되는 ‘공익성심사위원회’는 국민의 시청권 보장, 국민 문화향상, 방송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방송·영상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안 제14조의2제1항),
 - 사전심사 없이 49%를 초과하는 지분을 취득하면 공익성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49%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안 제14조의2제2항), 심사결과 공공의 이익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해당 주식의 매각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며(안 제14조의2제6항), 이를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해당 주식 매입가액의 최대 0.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14조의3).
- 이를 통해 개정안은 일반PP 및 홈쇼핑PP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49% 허용하는 길을 열어주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심사위원회라는 질적 심사 장치를 도입하고, 의결권 제한, 주식강제매각, 이행강제금 등 안전장치를 통해 부작용을 통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K-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 자원 확보와 방송의 공익성 수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절충하려는 것으로 보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글로벌 경쟁환경에서 해외 자본 확충 및 투자확대를 통해 시장 전반의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

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방미통위 구성 이후 유료 방송 소유규제 개선 전반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외국자본의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공익성 심사를 도입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종속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와 함께, 급변하는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여 국내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규모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외국자본 출자·출연 현황 ('25.11월 기준)

구분	사업체명	외국인 지분율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 텐츠 사업자	이채널	0.73 %
	GS리테일	10.36 %
	현대홈쇼핑	14.14 %
	CJ ENM	18.62 %
	대원방송	39.57 %

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

- 개정안은 「방송법」 및 「IPTV법」에서 규정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있음(「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제16항부터 제19항 삭제, 「IPTV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 삭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第8條(所有制限等) ① ~ ⑮ (생 략) ⑯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⑰ 특정 위성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2. 위성방송사업자 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제8조(소유제한 등) ① ~ ⑮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⑮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⑯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다음 각 호의 방송사업자를 합산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전체 유료 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2. 「방송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3. 「방송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위성방송사업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도서산간 등 위성방송 수신만 가능한 지역은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 산정에서 배제할 수 있는 예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 법 제8조제16항 및 제17항, 「IPTV법」 제13조는 본래 합산규제1)를 규정한 조항으로, 유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1) 합산규제 도입 전의 방송법 및 IPTV법은 유료방송사업자에 따라 시장점유율 규제가 상이하여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었고, 유료방송사업에서 특정 플랫폼사업자가 특수관계자를 통해 다른 플랫폼사업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특수관계자²⁾인 다른 유료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음.

- 그러나 이종(異種) 사업자 간의 합산규제는 향후 규제의 타당성 및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며, 2018년 6월 27일에 이종 사업자 간 합산규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일몰되었음.

- 이에 현재는 「방송법」 제8조제16항제1호에 따라 특정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³⁾

「IPTV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임.⁴⁾

을 겸영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유료방송 시장의 독과점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2015년 6월 합산규제 조항이 도입되었음.

2) (개인) ① 배우자 및 친인척 ② 본인 단독 또는 ①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출연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③ 본인 단독 또는 ①, ②와 합하여 30% 이상 출자·출연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법인) ① 임원, ② 계열사 및 그 임원, ③ 본 법인을 특수관계자로 둔 개인, ④ 본인 단독 또는 ①, ②, ③과 공동으로 30% 이상 출자·출연하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3) 종전의 합산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조항(제8조제16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17항)은 일몰됨.

4) 종전의 합산규제에 해당하는 규제조항(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은 일몰됨.

< 합산규제 일몰 후 현황 >

특수관계자 가입자 합산대상 사업자 특정 방송사업자	SO	위성 방송	IPTV 사업자
SO(방송법)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일몰(시장점유율 규제 미적용) (2018.6.27.)	
위성 방송(방송법)	일몰(시장점유율 규제 미적용) (2018.6.27.)		
IPTV 사업자(IPTV법)	일몰(시장점유율 규제 미적용) (2018.6.27.)		시장점유율 규제 적용

- 이러한 시장점유율 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과 지역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전규제로서 기능하였으나, 규제 형평성 측면에서의 논란 및 정책 목적을 보장할 수 있는 보조적 수단의 존재⁵⁾ 등을 근거로 한 비판적 의견이 있었으며,

최근 SO의 경영난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현재 시장 구도를 고착화하고 구조조정 등을 가로막아 규모 있는 사업자의 출현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가능함.
- 개정안은 이미 합산규제가 일몰(2018.6.27.)된 지 상당한 기간이 도과한 상황에서, 종전의 사전규제 중심의 규제체계를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고, 규모 있는 사업자의 출현을 제한하는 개별 점유율 규제를 개선하여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하고 서비스품질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5) 예컨대, 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소유제한 규정, 특정 채널사용사업자의 집중 방지, 시청점유율 제한 규정 등임.

-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방미통위 구성 이후 유료방송 소유규제 개선 전반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 이를 종합하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 형평성을 도모하고 유료방송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함께,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 및 지역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현행 규제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참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현황(2024년 하반기 평균)

구분	사업체명	사업자 수 (개)	가입자 수 (천 단자)	점유율
IPTV 제공사업자	KT	1	8,987	24.71 %
	SK브로드밴드	1	6,781	18.65 %
	LG유플러스	1	5,542	15.24 %
	소계	3	21,310	58.60 %
SO	LG헬로비전	23	3,511	9.65 %
	SK브로드밴드	23	2,815	7.74 %
	딜라이브	16	1,905	5.24 %
	CMB	11	1,362	3.75 %
	HCN	8	1,258	3.46 %
	개별SO (9개사)	9	1,422	3.91 %
	소계	90	12,273	33.75 %
위성방송 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	1	2,781	7.65 %
	소계	1	2,781	7.65 %
합계		94	36,365	100.00 %

※ 출처 : 2024년 하반기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 공고 (과기정통부 공고 2025-656호)

4.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청 등의 근거 신설

- 개정안은 유료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검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8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8조의3 (유료방송 자료의 신뢰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 가입자수, 홈쇼핑 판매총액, 시청 데이터 등의 자료 제출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받은 자료를 검증할 수 있다.

- 당초 정부는 ‘시장점유율 규제 차원’에서 법 제8조제19항⁶⁾에 근거하여 유료방송 가입자 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제98조의3을 신설하여 ‘방송시장의 신뢰성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유료방송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유료방송 시장에서는 플랫폼 사업자(IPTV, SO 등)와 콘텐츠사업자(PP) 간의 관계 등에서 송출수수료, 프로그램 사용료 등의 갈등이 지속 되는 상황임.

6)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 등) ⑨ 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가입자 수의 산정 및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홈쇼핑 사업자들은 TV 시청인구 감소로 인해 방송 매출이 지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송출수수료는 급격히 인상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홈쇼핑업체들이 시청자를 모바일로 유도하여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TV 방송 매출만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일부 케이블TV에서의 홈쇼핑사가 방송송출을 중단하는 사태로까지 이어진 바 있음.
-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거래의 기준이 되는 핵심 데이터 대부분을 각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수수료 등의 산정근거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양측 간 분쟁이 발생해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부재하여 합리적인 해결이 어렵고, 정부도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러한 문제는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들의 소유·점영규제 및 점유율 규제 등이 완화되는 경우 시장지배적인 사업자의 등장으로 구조적 불균형 문제가 심화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정안은 정부가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의 정착, 콘텐츠 산업 발전의 선순환 구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사

전규제 완화 시 정부의 사후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임.

○ 다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제시됨.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과 협상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유료방송 관련 자료 확보와 검증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방미통위 구성 후 유료방송 사업자 간 갈등 대응 전반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또한, 가입자 수 등 자료 제출 및 검증에 관한 기준·절차·방법 등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으로, 홈쇼핑 송출수수료 및 프로그램 공급계약 시 고려 요소에 포함되는 홈쇼핑 방송매출액, 방송콘텐츠 투자액이 정부의 요구·검증자료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 **한국IPTV방송협회**는 유료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중에서 70~80%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방송사업자, 대형채널사용사업자, 보도전문채널사업자와의 거래이고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도 대부분 이들 사업자와 관련이 있는 상황으로, 자료제출 의무 대상사업자를 유료방송사 뿐 아니라 지상파방송사 등 전체 방송사업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6